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조례전부개정(2023.09.26.) 이후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3.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7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위촉 ※ 25. 9. 29. 내부정책조정기구 회의시 지시사항
- (제2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확대 (1회→2회)

○ 아동참여위원회

- (제27조) 아동위원의 연령기준에 의한 해촉 명시
- (제29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임시회 개최 기준 정비

○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前 내부정책조정기구) 관련 장 신설(제6장)

- (제35조~제38조) 추진단 설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4개 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여성아동과

라. 입법예고 : 2026. 5. 7. ~ 5. 27.(20일)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며, 아동위원의 연령 도달에 따른 임기 기준과 아동참여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의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중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신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조성하려는 후속차원에서 조례와 전담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 검토결과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조례안 제22조(회의)에서 정기회의를 연2회로 개최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조례안 제22조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배진위